

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3500
------	------

2026. 3. 13.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6년 2월 9일, 김형재 의원(찬성자 13명)

나. 회부일자 : 2026년 2월 12일

다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334회 임시회】

-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(2026. 3. 6.)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수정안 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김형재 의원)

1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는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의 진흥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그 위상을 제고하고, 서울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심신단련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 중이나, 상위 법령에 따른 관내 태권도시설은 노후화가 심각하여 현실적인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음.

- 이에 따라 상위 법령에 규정된 태권도단체의 경우 현행 대부료의 요율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현행 조례의 목적 달성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에 따른 태권도단체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할 경우, 대부 요율을 1,000분의 10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).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이윤희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태권도 진흥을 위해 현행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관내 시립태권도시설의 노후화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대부요율 인하를 통해 이를 해소하고자 발의되었음.

나. 개정안의 필요성

- 정부는 태권도를 진흥·발전시키기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바, 2017년에는 ‘태권도의 문화콘텐츠화’를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하였고, 최근에는 태권도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목록 등재를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음.

또한 「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」은 태권도를 법적으로 우리 민족 고유의 무도(武道)이자 국기(國技)로 정의하고 있음.

- 이에 서울시도 태권도에 대한 체계적인 진흥과 지원을 위해 「서울특별

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」를 제정하여 시행(2021.9.30.)하고 있으며

현재 서울시 소유의 태권도시설로는 역삼문화공원 내 건물(국기원 중앙수련장 등)이 있고, 해당 건물은 1972년 준공 후 1975년 서울시에 기부채납되어 현재 재산관리관은 관광체육국 소관으로 되어 있음.

- 다만 1987년 6월 자치구제 실시에 따라 토지는 1989년 1월 강남구로 승계되었으며, 이로 인해 토지(강남구)와 건물(서울시)의 소유주가 이원화된 상황임.

< 서울시 소유 태권도시설 현황 >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개 원 : 1972. 11. 30.○ 위 치 : 강남구 역삼동 635번지 (역삼근린공원 내)○ 규 모 : 부지면적 12,600㎡, 연면적 4,612㎡(지하 1층, 지상 3층)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소유자 : 건물(서울시-체육정책과), 토지(강남구-공원녹지과)※ 대한태권도협회에서 국기원 건립 후 시에 기부채납('75년, 20년 무상사용)○ 운영방식 : 서울시 → 강남구(위임), 강남구 → 국기원(민간위탁)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기간 : 1994.2.12. ~ 현재(1년 단위 재위탁)- 대상 : 태권도장(지하1층,지상3층) 4,220㎡, 식당 및 기념관(지상2층) 392㎡- 연간 위탁료('26년 기준) : 678,316천원(토지 653,736, 건물 24,580)

- 현재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(국기원)의 결산 공시를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수익 257억 5천1백만원에 비용 243억 7백만원을 집행하여 수익 대부분을 태권도 사업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음.
- 또한 서울시는 2023.7.18. 조례 개정으로 관내 태권도시설 개보수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, 최근 3년간 평균 8억9천만원, 총 26억 6천만원을 노후 설비 개선에 지원한 바 있음.

< 최근 3년간 시 소유 태권도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현황 >

구분	사업비	주요 내용	추진 일정	비고
'26년	200백만원	. 사업계획 협의 중	'26. 2 ~	체육정책과 (區 생활체육과)
'25년	1,800백만원	. 냉난방기기 신규 설치(83대) 및 전기증설 / 1,430백만원	'25. 2 ~ '25. 7	체육정책과 (區 생활체육과)
		. FCU(30대) 및 노후 수도배관 교체 / 370백만원	'25. 8 ~ '26. 1	
'24년	660백만원	. 지붕 외부 및 내부 마감재 보수 . 보일러 및 배관 교체	'24.12 ~ '25. 2	공원조성과 (區 공원녹지과)

-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, 현 수탁기관이 시설개선을 위해 자체 수익을 대규모로 투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, 서울 태권도 진흥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 시 소유 태권도시설의 대부요율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은 과한 특혜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.

다. 개정안의 주요 내용

(1) 태권도시설 대부요율(안 제10조)

- 동 개정안은 「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태권도단체만이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가 정한 대부요율이 아닌 예외적 대부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이에 대부요율 특례 적용 대상 태권도단체로는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이 있음.

< 관련 신.구조문 대비표 >

현	행	개	정	안
	<신 설>	제10조(태권도시설 대부요율)	시장은	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

현행	개정안
제10조 (생략)	<p>조례」에도 불구하고 태권도진흥을 위해 「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에 한해 대부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.</p> <p>제11조 (현행 제10조와 같음)</p>

-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인 ‘공유재산’은 임의로 관리·처분할 수 없고 타인에게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경우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에 규정된 요율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징수해야 함.

또한 관련 법령에서 공유재산의 사용·대부료는 시가(時價)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(評定價格)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 서울시의 경우 법령의 위임사항을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를 통해 규정하고 있으며, 기본적인 사용·대부 요율은 1천분의 50 이상임.
- 다만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·대부료율의 하한만을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 사안별로 사용·대부료율을 어느 수준에서 정할 것인지는 조례로 포괄 위임하고 있으므로,

법령에서 정한 “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”를 준수한다면 지방자치단체별 필요에 따라 폭넓은 입법재량¹⁾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음.

- 또한 서울시도 필요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개별 조례로 정하고 있는 사례²⁾가 있으며,

동 개정안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공유재산의 사용·대부료를 정하고 있고,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와의 관계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법제적 문제³⁾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- 따라서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가 정한 대부요율이 아닌 동 개정안의 예외적 규정이 적용된다면 서울시 소유 시설을 사용 중인 태권도단체(국기원)의 위탁료 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판단됨.

< 최근 3년간 국기원에 부과된 재산 위탁료 현황 >

(단위 : 원)

구분	토지 부과액	건물 부과액	총 위탁료	총 위탁료 대비 건물 부과액 비율
2024	592,895,170	12,778,410	605,673,580	2.1%
2025	622,573,560	12,654,440	635,228,000	2.0%
2026	653,736,420	24,579,860	678,316,280	3.6%

- 다만 국기원이 위탁받아 사용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의 사용료는 매년 6 억원 이상이며, 이 중 건물에 대한 사용료는 전체 사용료의 약 3.6%(2026년 부과 기준)에 불과하여 건물분에 대한 대부요율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단체의 재정 개선 효과는 미미하다고 판단됨.

1) 법제처 2022. 11. 23. 의견제시22-0315, 법제처 2021. 10. 26. 의견제시21-0351

2) 「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」 제45조(문화시설 대부요율), 「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」 제20조(공유재산 임대 등)

3) 법제처 2014. 1. 29. 의견제시14-0013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

- 태권도시설인 국기원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노후화 개선 및 태권도 진흥을 위해 태권도시설 대부요율 특례의 필요성은 있음.
-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와 목적에 따라 공유재산의 구분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, 해당 재산의 종류가 바뀌더라도 특례 요율이 일괄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함.

나. 수정주요내용

- 공유재산의 구분과 상관없이 특례 요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함 (안 제10조).

VII. 심사결과 : 수정안가결

(재적위원 8명, 참석위원 8명, 참석위원 전원찬성)

VI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IX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500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6년 3월 6일
제안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태권도시설인 국기원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노후화 개선 및 태권도 진흥을 위해 태권도시설 대부요율 특례의 필요성은 있음.
-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와 목적에 따라 공유재산의 구분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, 해당 재산의 종류가 바뀌더라도 특례 요율이 일괄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함.

2. 수정주요내용

- 공유재산의 구분과 상관없이 특례 요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함 (안 제10조).

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태권도시설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) 시장은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에도 불구하고 태권도진흥을 위해 「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태권도단체에 한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10조(태권도시설 대</u> <u>부요율) 시장은</u> <u>「서울특별시 공유</u> <u>재산 및 물품관리</u> <u>조례」에도 불구하</u> <u>고 태권도진흥을 위</u> <u>해 「태권도 진흥</u> <u>및 태권도공원 조성</u> <u>등에 관한 법률」에</u> <u>따라 문화체육관광</u> <u>부장관의 인가를 받</u> <u>은 단체에 한해 대</u> <u>부요율을 해당 재산</u> <u>평정가격의 1,000분</u> <u>의 10 이상으로 할</u> <u>수 있다.</u></p>	<p><u>제10조(태권도시설 사</u> <u>용료 및 대부료의 요</u> <u>율) 시장은 「서울특</u> <u>별시 공유재산 및 물</u> <u>품관리 조례」에도</u> <u>불구하고 태권도진</u> <u>흥을 위해 「태권도</u> <u>진흥 및 태권도공원</u> <u>조성 등에 관한 법</u> <u>률」에 따라 문화체</u> <u>육관광부장관의 인</u> <u>가를 받은 단체에 한</u> <u>하여 사용료 및 대부</u> <u>료의 요율을 해당 재</u> <u>산평정가격의 1,000</u> <u>분의 10 이상으로 할</u> <u>수 있다.</u></p>
<p><u>제10조 (생 략)</u></p>	<p><u>제11조 (현행 제10조와 같음)</u></p>	<p><u>제11조 (현행 제10조와 같음)</u></p>

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,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태권도시설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) 시장은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에도 불구하고 태권도진흥을 위해 「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태권도단체에 한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10조(태권도시설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) 시장은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에도 불구하고 태권도진흥을 위해 「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에 한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.</u></p>
<p><u>제10조 (생 략)</u></p>	<p><u>제11조 (현행 제10조와 같음)</u></p>